

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펀드 출자계획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펀드 출자계획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유망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충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충북↔스타트업 상생 펀드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○ 출자목적

- 유망 창업기업이 소유한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인구, 환경, 문화 등 충북이 직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
- 투자뿐 아니라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도모

○ 출자근거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, 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

○ 출자방식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당해 펀드에 출자

○ 가치충복↔스타트업 상생펀드

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(주)블루포인트 파트너스
- 유한책임조합원 : 충청북도
- 존속기간 : 2024년 ~ 2032년 (8년, 투자 3년, 회수 5년)
- 펀드규모 : 55억원 (충청북도 50, (주)블루포인트파트너스 5)

▣ 펀드 출자금 내역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출자액	출자비율
합 계		55	100
LP(출자자)	충청북도	50	91
GP(운용사)	(주)블루포인트파트너스(민간)	5	9

- ※ 연도별 투자금액은 펀드구성 일정 및 투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- ※ 운용사 출자: 업무집행조합원(GP)은 벤처투자조합 운영을 위해 출자금 총액 1%이상 출자 의무
- ※ 근거법령 :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(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)
 - 4.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

- 투자대상 : 7년 이내 창업기업

- 도 투자조건

- ① 충북 지역 기업에 약정총액의 30% 이상(16.5억원) 투자
-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창업기업에 약정총액의 30%(16.5억원) 이상 투자
- ③ 실증지원 사업 참여 스타트업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(11억원) 투자
- ④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(11억원)

※ 모태펀드 관리 기준을 준용하되 투자 성과분석을 통해 연도별 출자금 변경, 출자금 납입 중단 등 규약 추가

○ 기대효과

- 충북의 잠재성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의 실질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결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
- 도내 유망기업 육성 및 창업기업 충북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도모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제출배경

- 인구소멸, 환경, 문화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·기술력을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펀드 투자를 통한 기술창업 지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
- 투자 확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로 중복 창업 활성화 및 기업 생존율 제고
 - 창업기업 수 지속 감소 : ('20년) 40,749 개 → ('21년) 39,195 개 → ('22년) 38,234 개
 - 창업기업 7년 생존률('21) : 전국(26.0%) > 충북(25.6%), 전국대비 0.4% 낮음(전국 10위)

나. 추진경과

- 펀드 출자계획 수립 : '24. 5. 3.
- 펀드 출자사업 공고 : '24. 5. 16. ~ 6. 5.
- 1차 서류 평가 : '24. 6. 11.
- 2차 발표 평가 : '24. 6. 18.
- 펀드 운용사 최종 선정 : '24. 6. 21.
 - ※ 공고 및 운용사 선정 대행 :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

다. 종합의견

- '충청북도 스타트업 상생펀드 출자계획 동의안'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¹⁾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을 위해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,

1) 지방재정법 [시행 2024. 5. 17.]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유망 창업기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환경, 문화, 지역소멸 등 도내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중장기 펀드 조성의 일환임
- 본 출자계획 동의안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²⁾ 및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³⁾의 법적 근거를 충족함
- 아울러, 도내 사회문제 해결, 투자 방식 변화 등 충북도에 적합한 전략펀드 조성을 위해 공모 및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운용사를 선정하였으며, 심사 시 정책목적 부합성, 전문적 운용 역량,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
- 선정운용사인 (주)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국내 대표 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*로,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발간한 2022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선정 창업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엑셀러레이터 2위에 오르는 등 우수한 역량을 가진 민간 운용사로 판단되며, 향후 벤처투자조합 운영 시 전국 유망 창업기업들의 지역 집적화를 통한 충북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

2)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 2. 모태조합 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3)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.

8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
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12. 벤처투자조합 15. 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

○ 총 펀드규모는 55억원이며, 이 중 충청북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50억(90.9%)을 출자하고자 함

- 충청북도 50억(90.9%), (주)블루포인트파트너스 5억(9.1%)

○ 본 펀드의 투자조건은 다음과 같으며, 모태펀드 관리기준을 준용함

- ① 충북 지역 기업에 약정총액의 30% 이상(16.5억원) 투자
- ② 지역사회 문제 해결 창업기업에 약정총액의 30%(16.5억원) 이상 투자
- ③ 실증지원 사업 참여 스타트업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(11억원) 투자
- ④ 3년 이내 초기기업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(11억원)

○ 아울러, 출자금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투자 성과분석을 통한 연도별 출자금 변경이나 상호 협의에 의한 출자금 납입 중단 등 대응 조건을 규약에 추가하였음

○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응력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서 비롯됨에 따라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역 내 안정적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적시에 발굴·지원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문제로 대두되었음

○ 본 출자계획 동의안은 향후 도내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투자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 구축으로 도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충북 지역의 잠재성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민의 삶과 연관된 사회문제를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결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승인함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